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택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444 · 6090

제 368 호

1973. 5. 3.

# 시보

차례

◎ 조례

제 768 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	3
---------	--	---

◎ 고시

제 65 호	도시계획시설(소로) 일부변경폐지 및 지적변경승인 .....	3
제 66 호	도시계획 학교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	4
제 67 호	도시계획 학교(중학교용지)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	5
제 68 호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수수료 결정 .....	5
제 69 호	도시계획 학교(중학교용지) 시설변경(폐지) 지적승인 .....	6
제 70 호	사회단체등록취소 .....	7

◎ 공고

제 87 호	도시계획 고도지구 일부지정 .....	8
--------	----------------------	---

◎ 사령

.....	.....	8
-------	-------	---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조 례
--------

분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1973. 5. 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하점생

◎ 서울특별시 조례 제 768 호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 1964.10.30 서울특별시조례제 358 호제정  
1973. 5. 2 서울특별시조례제 768 호개정 )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 조직 ) ①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각국장,과장,계장으로 구성하되 그 인원은 5인이상 9인이내로 하고 교육감이 이를 임명한다. "를 "①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부교육감, 각국장,과장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된다."를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학무국장과 관리국장이 된다."로 한다.

제 4 조 ( 회의 ) "④ 위원장 부재시는 상위직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를 "④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65 호

도시계획시설(소로) 일부변경  
(폐지 및 지적변경승인)

-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소로) 일부변경과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제 12조와 동법제 13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호(73.4.4)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1-4 제368호

시 보

1973.5.3

가: 노선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쪽원(回)	연장(回)	기점	종점	비고	
기점 소로	2			8	134	부암동 134 (중로 2 류 56호)	부암동 131 (부암동동계)	서고 73 호 (69.9.13)	
변경	2			8	134	"	"	폐지	

나. 도면: 별첨

1973. 4. 30.

서울특별시장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66 호

도시계획 학교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1. 도시계획 학교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3 조 및 전설부고시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3. 4. 30.

서울특별시장

## 3. 학교시설 결정 조서

구분	위치	시설 면적(평)	비고
학교	서대문구 평창동 215, 217, 216-1, 216-2	5,571	

별첨: 도면참조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67호

도시계획학교 (중학교용지) 시설  
결정 및 지역 송인

1. 도시계획학교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건설부 고  
시 제 123호 (73. 4. 4)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성북구청 시민봉  
사실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학 교 시 설 조 서

구 분	위 치	시 설 면적	비 고
학 교	성북구 쌍문동 150-1, 산 83-6 산 83-11	22,248	22,248 중 7,722는 녹지로 설정 계획임

## 별 첨 :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  
획국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에 보관)

1973. 4. 30.

서 울 특 별 시 장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68호

자동차등록번호교부수수료결정

1. 도로운송 차량법 제 25조 제 1항  
에 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

호표 교부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결정  
되었기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표  
교부수수료 징수조례 제 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고시 한다.

1973. 4. 30

서 울 특 별 시 장

11-6 제 368 호

시 보

1973. 5. 3

다 음				
종 별	규 격	단 위	가 격	비 고
자동차번호표(소형)	1×230×90	조	130 원	1조 1매
자동차번호표(보통)	1×335×170	조	480 원	1조 2매
자동차번호표(대형)	1×440×220	조	720 원	1조 2매

◎ 서울특별시 고시 제 69 호

도시계획학교(중학교용지) 시설  
변경(폐지) 지적승인1. 도시계획학교(중학교용지) 시설변경(폐지) 및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123호(73.4.4)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영등포구청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3. 5.

서울특별시장

3. 도시계획학교(중학교용지) 시설변경(폐지)

구 분	위 치	시 설 면적	비 고
학 교	영등포구 개봉동 77 부역	16,678	폐지 중학교용지- 주거지 역

별첨: 도면참조(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  
민 봉사실에 보관)

제 368 호

시

보 1973.5.3.

12-7

## 고 시

규정에 의하여 사회 단체의 등록을  
취소하였기 이에 같이 고시한다.

## ⑤ 서울특별시 고시 제 70 호

## 사회 단체 등록 취 소

1973년 5월 일

사회 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제 8 조의

서울특별시장 양 택식

다 음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취소이유	근거
33	서울소비자대책본부	김 경석	소재불명및정기보고서 계속2회이상 불이행	법률제 8조제 1 항제 2호제 4호
34	반공시청각교육연구소	이 경우	"	"
35	대한무도예술협회중구지부	김 영규	"	"
38	성북지부	이 근배	"	"
39	서울직할지부	안 무중	"	"
40	성동지부	김 벽연	"	"
41	용산지부	박 명우	"	"
42	종로지부	고승부	"	"
45	성동제2지부	소 용택	"	"
47	용산제2지부	최 선규	"	"
51	대한피알협회 영등포지부	유 영도	"	"
55	시민승공생활화계통협의회	김 영두	"	"
56	대한무도예술협회남대문지부	김 진배	"	"

12-8 제 368 호

시

보

1973.5.3.

## [ 공 고 ]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87 호

도시계획고도지구일부지정

당시 관내 서울운동장 주변 일부  
지역에 대하여 전설부 고시제 115호  
( 73.3.31 )로 고도지구로 지정되었

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4 항의 규정  
에 의하여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3. 5. 3.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고도지구지정조서

구분	명 칭	위 치	면적	고 도 제 한
신설	서울운동장 주변고도지구	종구율지로 6가 및 성 동구 신당동 일부 지역	6,900	최고도지구 현지 반고 ( 평균 20 미 터 ) 에서 12 미터 이하
신설	"	"	79,200	최고도지구 현지 반고 ( 평균 20 미 터 ) 에서 9 미터 이하
신설	"	성동구 신당동 일부 지역	8,400	최고도지구 현지 반고 ( 평균 24 미 터 ) 에서 6 미터 이하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 도면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보관

## [ 사 령 ]

◎ 1973. 5. 1.

주택건설과 지방건축기원보 백승환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면에 처함.

경 북 지방행정주사 강영결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총로구근무를 명함.

성동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 주택관리관 파견 근무를 해제함.	김상희	보건예방과 (주택관리 관실파견) 소년기술원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서기 이상필
서대문구 지방건축기사보 주택관리관 파견 근무를 해제함.	주효승	구획정리 기한부공무원 제2과 (5급율류토목)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차영조
영등포구 지방건축기사보 주택관리관 파견 근무를 해제함.	변한섭	◎ 1973.5.2. 공무원교육원 (주택관리관 파견근무중) 주택관리관실 파견 근무 해제를 명함.	김상운
마포구 지방건축기원보 주택관리관 파견 근무를 해제함.	손우현	용산구 지방행정주사보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신태우
영등포구 보건소 지방보건기원보 주택관리관 파견 근무를 해제함.	서길석	종로구 지방행정주사 기획과 근무를 명함.	채승기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보 경기도 전출을 명함.	전홍규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송기섭
영등포구 (주택관리 관실파견) 지방행정서기 주택관리관실 파견 근무를 해제함.	김명연	동대문구 지방행정주사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심상준
서대문구 (주택관리 관실파견) 지방행정서기 주택관리관실 파견 근무를 해제함.	하두표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보 영등포구 근로자합숙소 근무를 명함.	이경희
		수도관리 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배이상

11-10 제368호

시 보

1973.5.3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수도관리사업소	이 공수	시정개발 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 마포구 수도사업소	김 친귀	성동구 지방행정주사 한길수 환경과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주사 용산구	김 오근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보 이진우 마포구 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주사 동대문구	양재용	마포구 지방행정서기보 박재홍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주사 남부병원	송상진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사무관 정재태 주택관리관실 파견 근무를 해제함.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마포구	심재영	경기도 지방행정서기보 박용빈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4호봉을 급함.
마포구 지방행정주사 성동구	유영근	불광동 보조수원지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주사 종로구	송영빈	◎ 1973.5.3. 보건예방과 (간호사업 계장) 지방간호기과 박정순 동부병원 간호과장에 보함.
위생연구소 지방행정서기보 성동구	김영년	
종로구 지방행정주사 청소제 2과	문재철	
환경파 지방행정주사	김용익	

제 368 호

시

보

1973.5.3 11-11

마포 병원 (간호과장)	지방간호기좌 보건예방과 간호사업 계장에 보함.	이 금 선	동대문구 보건소 (방역과장)	지방보건기좌 방역계장에 보함.	이 여 층
동부 병원 (간호과장)	지방간호기좌 영등포병원 간호과장에 보건예방과 (방역계장)	이 춘 애	◎ 1973.4.30.	성북구보건소 지방간호기사보 지방간호기사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이 학 인
동대문구 보건소	방역과장에 보함.	이 종 화	중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